

쓰레기 만두소와 규제완화 그리고 건축법

Dumplings Made of Refuse, Relief of Regulations, and Building Codes

단무지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 무우, 아무렇게나 버려진 이것들을 섞어 제조한 만두소를 가지고 넣어 만든 것, 일컬어 쓰레기 만두 파동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다. 매스컴들은 만두를 반품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줄을 있는 수퍼마켓의 계산대와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만두를 직접 만듭니다'라는 광고를 붙여도 한산하기만 한 만두가게를 대조사시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정상적인 재료만 쓰는 만두 제조회사조차 공장 가동률은 형편없이 떨어지고 영세회사들은 부도를 맞고 있다.

이런 현상은 급기야 잘 나가던 만두제조회사 사장의 한강 투신자살로 이어졌다. '나도 모르고 만들었다. 내 아이들에게도 먹였다'며 떳떳한 아빠임을 유서에 남기고 자살한 그를 보며 국민들은 또 다른 울분을 토해내야만 했다. 비위생적 만두를 전 국민이 먹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건강을 조금씩 잃었다면 그는 그로 인하여 한 생명을 버린 것이다.

만두 파동은 국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파문을 야기하였다. 1,000여만 달러에 달하는 한국 만두의 일본 수입 중단 사태가 그렇고 이제 막 미국의 주류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한국 만두가 꽂도 피기 전에 시들까 하는 걱정이 그것이다. 미국에는 이태리의 파스타는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와 터키 심지어 베트남의 만두까지 1년에 8,000여만 달러가 소비되는데, 집채, 두부, 부추 등 야채가 들어 있는 한국 만두는 일본 것보다 영양가와 맛이 좋아 김치보다도 시장성이 더 밝다는 것이다. 3년 동안 갈고 닦아 5%의 시장을 확보한 마당에서 이번 파동은 치명타라는 것이다. 15년 전 쇠기를 라면 파동 때 일본이 이를 이용해 자국의 라면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것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으로 지구촌이 되어버린 세계 속에서 한국의 신인도에 먹칠을 하는 부끄러운 일이 되어 버렸다.

바닷물에 소금과 염료를 섞어 만든 간장으로 유명한 황금장유 사건부터 쇠기름 라면 파동, 톱밥과 공업용 착색료를 넣은 고춧가루, 납 들어간 조기, 농약 범벅의 야채 등 불량 식품은 언제나 곁에 있어 왔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 대응을 외쳐 댔지만 항상 공염불로 끝나고 말았다. 따라서 어찌 보면 이번일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요, 능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단지 지구가 온라인화 된 탓에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조금 더 클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원인(原因)을 배금사상, 도덕적 해이 등에서 찾아 왔다. 물론 이러한 것은 맞는 말이며, 사회 각 분야에 걸친 것이기에 네 탓 전에 내 탓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근인(近因)은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한 규제완화정책 탓이라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즉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식품분야 규제개혁 정책평가 연구'라는 대외비 보고서를 보면 98년부터 03년까지 식품관계 규제는 100건이 폐지되고 3건만이 신설되었다고 한다. 보사연은 식품의 경우 규제강화가 세계적인 추세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으로써 식품안전의 기반이 약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폐지된 규제가 '식품위생관리인의 위생 관리 의무, 식품의 자기 품질검사 대상업종, 식품첨가물 사전제품검사, 식품 운반·판매업자의 위생교육, 식품제품 검사표시' 등으로 이 제서야 재 규제 논의가 일고 있다고 한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 의식주(衣食住)이다. 먹거리에서 불량식품의 남발 원인이 규제완화에 있었다면 식주(食住)라는 두바퀴 수레의 한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건축사들은 건축 관련법 속에서 이뤄진 규제완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여 식품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의 고객이며, 소비자인 국민과 우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이다.

건설교통부의 건축 관계 규제완화는 98년 이후 130건을 폐지하고 58건을 개선한 것으로 자체 자료에 나타나 있다. 필자는 국민의 편에서 이를 검토하면서 전반적으로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으나 재고해야할 시향도 꽤 있음을 발견하였다.

공동주택분야의 경우 3,000세대 이상 단지에서 우체국, 파출소 등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와 1,000세대 이상 단지의 유치원 부지의 삭제는 경기부양과 원가절감으로 당장은 좋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것이 되리라 본다. 작은 것이지만 주민 운동시설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폐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파트라는 세대별 폐쇄공간에서 공중화장실의 필요성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을 모르는 일이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신고가 50m²에서 300m²로 늘어난 것이다. 물론 주택의 경우, 추후 보완하여 100m² 이상의 경우 건축사가 설계하고 감리하게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100m²까지 신고라는 것도 안전 상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중층의 경우는 심각하다. 또한 공장의 경우, 일부는 2층 이하 500m²까지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것 등은 선진국들이 대부분 10m² 이하를 신고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전적 측면에서 100개동 중 단 1개동만 부실이 나타나 붕괴된다하여도 그 피해는 막대하며, 인명피해라도 생기면 사회적 여파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대수선이다. 기둥을 자르고 벽을 허물어 구조체를 수정하는 문제가 신고만 하면 되고 리노베이션 또한 건축사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얼마 전 리노베이션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난 것처럼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다행이 큰 인명피해는 없었기에 매스컴에서도 간단히 취급됐으나 항상 그러리란 법은 없다. 유사한 사고는 인테리어 현장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구조부문에 취약한 이들이 멋대로 보나 기둥을 없애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테리어 부문의 더 큰 문제는 가연재료 등을 마구 쓰고 비상계단 등을 막는 등 대형화재 참사를 불러 올 수 있는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업체가 단 하나라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처럼 인테리어 도면에 대한 건축사의 검토와 날인을 반드시 거치게 해야 한다.

그 밖에도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한 것에 면적규제 등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소형은 무관할 수 있으나 대형면적의 경우, 전기, 소방, 기계설비, 구조 등 많은 부분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도 설계 감리가 전무함으로 이로 인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소규모 건축물의 현장관리인 제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관계 및 국기계양대 설치 등은 우리들의 일을 더 많게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복리 그리고 애국심의 고취를 위하여 재고할 문제라 사료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같은 건축사라해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협회의 공식입장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나 선진국처럼 10m²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하며, 대수선 및 리노베이션 그리고 인테리어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 또는 승인도 건축사가 해야 한다는 점은 향후 반드시 관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이는 건축사들의 작은 이익 때문이 아니요, 전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 그리고 국부(國富)의 손실을 막기 위함임을 분명히 한다. 이런 것을 방지함으로서 인명이 손상되고 국부가 새나가며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는 쓰레기 만두 파동 같은 것을 재연하고 싶지 않은 충정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차제에 협회는 소관 부처와 함께 규제 완화에 대한 것을 건축사가 아닌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며, 특히 만물 중에 최귀(最貴)한 국민의 생명에 손상이 없도록 하는데 우선과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 ■